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정 : 2015년 5월 14일

개정 : 2015년 9월 11일

개정 : 2016년 8월 29일

(사) 한국안무협회

한국안무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안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관리하는 방송안무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방송안무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 대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조(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른 안무저작권 이용계약은 협회가 정한 이용계약약관 등에 의한다.

제4조(안무저작물)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무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동작으로 표현한 창작물로서 연결동작과 안무전체의 구성이나 느낌을 지칭한다.

제5조(사용구분) 협회의 관리저작물의 이용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 2. 방송 3. 전송 4. 웹캐스팅 5. 복제 및 배포 6. 공연, 복제, 전송

제2장 공연, 복제, 전송

제6조(교습소 등) ① 무도학원, 교습소 등에서의 공연, 복제, 전송 사용료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일반학원

- 한달 기준 : 500,000원(오십만원)
- 최저 금액 : 350,000원(삼십오만원)

- 할인율 표

개월수	할인전 금액	할인율	할인후 금액	한달기준
6개월	3,000,000원(삼백만원)	15%	2,550,000원(이백오십오만원)	425,000원(사십이만오천원)
12개월	6,000,000원(육백만원)	30%	4,200,000원(사백이십만원)	350,000원(삼십오만원)

• 프랜차이즈 학원

- 한달 기준 : 500,000원(오십만원)
- 최저 금액 : 325,000원(삼십이만오천원)

- 할인율 표

개월수	할인전 금액	할인율	할인후 금액	한달기준
6개월	3,000,000원(삼백만원)	20%	2,400,000원(이백사십만원)	400,000원(사십만원)
12개월	6,000,000원(육백만원)	35%	3,900,000원(삼백구십만원)	325,000원(삼십이만오천원)

비고)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협회가 제공한다.

② 6 개월 이상 장기계약시 사용료는 일시불로 납부하지 아니하며 매월 선불로 납부한다.

제7조(안무와 운동을 결합한 2차저작물) ① 안무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2차저작물을 작성할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한달 기준 : 300,000원(삼십만원)
- 최저 금액 : 210,000원(이십일만원)
- 할인율 표

• 일반

개월수	할인전 금액	할인율	할인후 금액	한달기준
12개월	3,600,000원(삼백육십만원)	15%	3,060,000원(삼백육만원)	255,000원(이십오만오천원)

• 프렌차이즈

개월수	할인전 금액	할인율	할인후 금액	한달기준
12개월	3,600,000원(삼백육십만원)	30%	2,520,000원(이백오십이만원)	210,000원(이십일만원)

비고)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협회가 제공한다.

② 본조 ①항에서 작성한 2차저작물은 안무저작물의 일부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료율 또는 금액을 협회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제 3장 전송

제8조(광고에 대한 복제·전송 사용료)

① 상업용 광고에 안무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한 안무당 복제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하다. 단, 저작권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단위: 만원>

범위 기간	지상파TV	케이블TV (위성TV, 지상파DMB포함)	인터넷	극장	기타(옥외, 지하철차량 등)
1개월 미만	100	80	30	30	50
3개월 미만	200	150	50	50	100
6개월 미만	300	250	70	70	125
12개월 미만	400	350	100	100	170

② 12개월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2개월 사용료 + (해당 개월수 사용료 × 80%)

③ 상업용 광고가 아닌 공익광고의 경우에는 ①항 사용료의 50%로 하되, 저작권격권과 관련된 사항은 제①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제정일)

- ① 이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제정일)

- ① 이 규정은 201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① 이용 계약 시 장기계약을 할 시에 할인율을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